

의안번호	제 618 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2월 18일 (제327회)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4년 2월 18일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618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4년 2월 18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의원직 사직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위원 정수에 미달할 경우 위원회 운영이 곤란하게 됨으로써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」를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범위를 조정함.
(안 제2조제1호)

제2조(상임위원회의 설치) 충청북도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

1. 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

-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함.
(안 제2조제2호~제5호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 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의회운영위원회 10명”을 “의회운영위원회 10명 이내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정책복지위원회 7명이내”를 “정책복지위원회 7명 이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행정문화위원회 7명이내”를 “행정문화위원회 7명 이내”로, 같은 조 제4호 중 “산업경제위원회 7명이내”를 “산업경제위원회 7명 이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건설소방위원회 7명이내”를 “건설소방위원회 7명 이내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충청북도의 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의회운영위원회 <u>10명</u></p> <p>2. 정책복지위원회 <u>7명</u>이내</p> <p>3. 행정문화위원회 <u>7명</u>이내</p> <p>4. 산업경제위원회 <u>7명</u>이내</p> <p>5. 건설소방위원회 <u>7명</u>이내</p> <p>6. (생 략)</p>	<p>제2조(상임위원회 설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 <u>10명</u> 이내</p> <p>2. ----- <u>7명</u> 이내</p> <p>3. ----- <u>7명</u> 이내</p> <p>4. ----- <u>7명</u> 이내</p> <p>5. ----- <u>7명</u> 이내</p> <p>6.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